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6. 5 선고 2024가단314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5. 22.
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

가. 피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(D호) 100㎡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는 9,3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4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23. 12. 18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7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성대

별지1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서울시 송파구 월근콘크리트조 평스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

1층 302.03㎡

2층 302.03㎡

3층 302.03㎡

4층 302.03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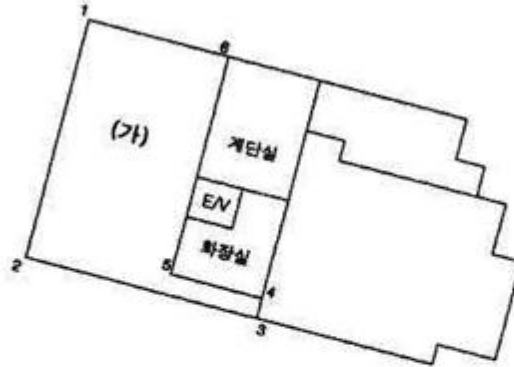
5층 302.03㎡

지층 477.32㎡

점유부분의 표시 :

2층 호 월근콘크리트조 100㎡로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5,6,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(가)부분

도 면

서울시 송파구 월근콘크리트조 평스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중 2층 호 100㎡로 1,2,3,4,5,6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

백지2

청 구 원 인

1. 원고들 중 A는 100분의 34, 같은 B는 100분의 44, 소의 E와 같은 F가 각 100분의 11의 비율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(갑제1호증 동기부등본)
2. 원고들과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5,6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인 D호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시작되고, 보증금 일천오백만원과 월 차임 및 관리비 1,760,000원을 매월 18일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,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습니다. (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, 갑제3호증 피고 사업자등록증)
3. 월 차임 및 관리비는 월차임 1,500,000원, 관리비 100,000원, 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160,000원으로 총 1,760,000원입니다. (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)
4. 그런데 피고는 월차임 및 관리비를 원고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4년 1월 8일까지 미지급된 총 차임 및 관리비는 9,360,000원입니다. (갑제4호증 월차임 입금내역표, 갑제5호증 예금거래명세서)
5. 또한,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이 지속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미지급된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5,6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인 D호를 인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구두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 (갑제6호증 내용증명 통지서)

